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. 8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마포구 종합청사의 최첨단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단 주요사업 현황을 추가하고, 어려운 법령 용어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 및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용어 등을 쉽고 적절한 용어로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내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

○ 변경 전

-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
-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사업
-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사업
-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 운영 사업
- 기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
- 상기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
○ 변경 후

-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

-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사업
-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사업
-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 운영 사업
- **구의 공공용청사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 운영 사업**
- 그 밖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
- 상기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
나. 어려운 법령 용어,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 및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용어 등을 쉽고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함

3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4. 예산조치 : 추경에 반영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08.7.24.~8.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08.19)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"를 "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"지방공기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"을 "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지방공기업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6조제3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"각호의 1에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에"로 "임명당시"를 "임명 당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"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2항에 따른"으로 한다

제18조 본문 중 "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58조제3항 및 제76조에 따라"로 하고, "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"를 "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"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7인"을 "7명"으로, "4인"을 "4명"으로, "3인"을 "3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2인"을 "2명"으로, 제2호의 "2인"을 "2명"으로 하며, 제3호의 "3인"을 "3명"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"각 호의 1에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의 "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4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"2인"을 "2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의 "제11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1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25조 중 "범위안에서"를 "범위 안에서"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라"으로 한다.

제27조 제6호 중 "기타"를 "그 밖의"로 하고, 제6호 및 제7호를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제6호부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구의 공공용청사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 운영 사업

7. 그 밖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

8. 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된 부대사업

제28조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"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"으로, 같은 항의 "영 제63조의 규정의 의하고"를 "영 제63조에 따르고"로 한다.

제29조 본문 중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하고, 제30조제1항의 "기준에 의하여"를 "기준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의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한다.

제31조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항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의 "제4항의 규정에 의한시정명령에"를 "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"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"다음 각호의"를 "다음 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"2월 이내에"를 "2개월 이내에"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"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"을 "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"결산완료후"를 "결산완료 후"로 한다.

제34조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37조제2항 중 "제1항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하고, 제38조제2항의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, 같은 항의 "당해연도내에"를 "해당 연도 내에"로 한다.

제39조제2항제3호 중 "기타"를 "그 밖의"로 하고, 제41조 본문 중 "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"로, 같은 조의 "영

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"를 "영 제68조에 따른다"로 한다.

제44조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항에 따라"로 하고, 제45조제1항의 "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"를 "법 제75조의2에 따라"로 한다.

제47조 본문 중 "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82조제1항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"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"를 "「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: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	제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(이하"공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--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제10조(감사)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 다. 다만,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(생략)	**제10조(감사)** ① ---------- ---------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6조제3항에 따른 ---------- -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~ 6.(생략)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	**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—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 1.~ 6.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 임명 당시 ---------- ---------- ③ 제2항에 따른 ---------- ----------
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구청장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	**제18조(위원회의 설치)** -------- 법 제58조제3항 및 제76조에 따라 ---------- ----------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 1.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.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 라 한다)가 추천하는 자 2인 3.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 1.~ 5.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	**제19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--7명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4명과 --------- ---------- 3명---------- 1. ---------- 2명 2. ---------- ----------2명 3. ---------- 3명 ② 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 ---------- 1.~ 5.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4항에 따라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제24조(이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④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 ⑤ (생략)	**제24조(이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)**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2명-------- -----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--- 제11조에 따른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⑤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**제25조(실비보상)** ---------- ---------- 범위 안에서 ----------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사무협조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	**제26조(사무협조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 ----------
제27조(사업) (생략) 1.~ 5. (생략) 6. 기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7.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된 부대사업	**제27조(사업)** (현행과 같음) 1.~ 5. (현행과 같음) 6. 구의 공공용청사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 운영 사업 7. 그 밖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8. 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된 부대사업
제2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 ① (생략)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,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**제2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**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----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---------- 영 제63조에 따르고 ------
제29조(사업연도)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	**제29조(사업연도)** ---------- 따른다.
제30조(계리의 원칙)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.	**제30조(계리의 원칙)** ① ---------- ---- 기준에 따라 ---------- ② ---------- ---- 따른다.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 (생략)	**제31조(사업계획 및 예산)**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.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② 제1항에 따라 -----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	⑤ ----------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----------
제32조(수입 및 정산) ① (생략)	**제32조(수입 및 정산)**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	② ---------- 다음 각 호의 ----------
1.~ 3. (생략)	1.~ 3. (현행과 같음)
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, 예산이월금 등 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 2개월 이내에 ----------
제33조(결산)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	**제33조(결산)** ---------- ---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----------
② 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	② ------- 결산완료 후 -----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4조(기금조성 등) ① (생략)	**제34조(기금조성 등)**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제1항에 따른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선수금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의한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**제37조(선수금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----------
제38조(일시차입금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	**제38조(일시차입금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---------- 해당 연도 내에 ----------
제39조(감독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	**제39조(감독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의 ----------
제41조(경영평가) 구청장이 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.	**제41조(경영평가)** --------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---------- 영 제68조에 따른다.
제44조(공무원의 파견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. ③ (생략)	**제44조(공무원의 파견 등)**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---------- ③ (현행과 같음)
제45조(업무상황의 공표) ①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**제45조(업무상황의 공표)** ①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-----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47조(과태료)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**제47조(과태료)**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---------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」 ----------